학생자치기구실 및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내규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학생자치기구실 및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내규

-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학생자치기구실 및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범위) 다음의 학생자치기구실 및 복지시설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.
 - 1. 학생자치기구실(총학생회, 총여학생회, 학부(과) 학생회, 학생복지위원회, 언론기구, 동아리)
 - 2. 체육분과 연습실(학생회관)
 - 3. 여학생 휴게실(학생회관)
 - 4. 학생생활상담소(학생회관)
 - 5. 의료지원실(학생회관)
 - 6. 공부방(학생회관)
 - 7. 세미나실(학생회관)
 - 8. Job-Cafe(학생회관)
 - 9. 커피전문점(학생회관)
 - 10. 문구점(학생회관)
 - 11. 은행(학생회관)
 - 12. 식당(학생회관, 항공우주센터)
 - 13. 매점(학생회관, 공학관)
 - 14. 복사실(공학관)
 - 15. 생활관(국제은익관)
 - 16. 체육시설(축구장, 풋살장, 농구장, 족구장, 테니스장, 골프장, 탁구장)
 - 17. 휴게실(공학관)
 - 18. 주차장

제3조 (운영의 기본방향)

- ① 이 시설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개인적인 취미활동 또는 단체적인 과외활동,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편의시설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한다.
- ② 이 시설의 혜택이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.
- ③ 이 시설이 교직원과 학생 또는 학생 상호간의 대화의 장소로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터전이 되게 한다.
- ④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교직원 및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.
- **제4조 (운영주체)** 제3조의 기본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무 및 방침은 운영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.
- 제5조 (관리운영의 위임) 학생처장은 제2조 1항에서 3항까지의 학생 전용 복지시설에 한 하여 운영과 이용에 있어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, 학생들의 취향을 조화있게 규합

제정일: 2012.12.21

하기 위하여 적당한 학생 단체 또는 학생에게 일상적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.

- 제6조 (개방시간) 학생회관(학생 전용 복지시설)의 개방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하되,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다만, 개방시간 이후에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부(과)장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행사 집회허가원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기타 복지시설의 개방시간은 관련 행정부서에서 정한다.
- 제7조 (용도변경) 각종 복지시설의 기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 (비품관리 및 인수인계)

- ① 시설의 기자재 또는 비품을 고의로 파손할 때에는 변상조치 한다.
- ② 관리, 운영의 인수인계는 반드시 관련 부서장의 승인 하에 행해져야 한다.

제9조 (학생자치기구실 관리 및 이용)

- ① 학생자치기구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 - 1. 학생회실 : 총학생회, 총여학생회, 학부(과) 학생회, 학생복지위원회
 - 2. 언론기구실 : 학보사, 방송국, 날틀편집위원회, 교지편집위원회, 영자신문사
 - 3. 동아리실 : 동아리연합회, 학생 동아리
- ② 각 단체의 장이 관리 및 운영을 맡으며 호실내 모든 비품과 기자재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다.
- ③ 호실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이와 관련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생 처장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 단체의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 - 1.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(신나, 석유, 페인트, 부탄가스 등)
 - 2. 흡연행위 금지
 - 3. 취사행위 금지
 - 4. 전열기구 등 난방기 사용 금지

제10조 (체육분과연습실 관리 및 운영)

- ① 체육분과 연습실은 태권도부, 검도부, 수박도 등 체육분과 동아리의 연습실로 사용되며, 체육분과장이 관리 및 운영을 맡고 호실 내 모든 비품과 기자재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.
- ② 체육분과장은 체육분과실 내에서 음주, 흡연, 잡담 등으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학생 및 단체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고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.

제11조 (여학생 휴게실 관리 및 운영)

- ① 여학생 휴게실은 전체 여학생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, 총여학생회장이 실내 정리와 비품관리에 책임을 진다.
- ② 총여학생회장은 휴게실의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휴 게실 내에서 음주, 흡연, 잡담 등으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고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.

제12조 (학생생활상담소 관리 및 운영) 학생생활상담소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개인상담, 집단상

제정일: 2012.12.21

담, 심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담사가 운영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.

- 제13조 (의료지원실 관리 및 운영) 의료지원실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진료, 의료상담, 응급처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지원팀에서 운영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.
- 제14조 (공부방 관리 및 운영) 공부방은 학생들이 시험준비, 과제준비 등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술정보팀이 정리와 비품 관리에 책임을 진다.

제15조 (학생회관 세미나실 관리 및 운영)

- ① 학생회관 세미나실은 온라인(시설대여시스템)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학생지원팀에서 실내 정리와 비품 관리에 책임을 진다.
- ② 학생회관 세미나실은 소그룹 세미나, 회의, 종교분과 동아리 예배, 스터디 모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공부, 과제준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6조 (Job-Cafe 관리 및 운영)

- ① Job-Cafe는 전체 재학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, 취업지원팀이 정리와 비품 관리에 책임을 진다.
- ② Job-Cafe는 취업에 관한 정보교환, 인터넷 검색, 취업자료 비치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.

제17조 (커피전문점, 문구점, 은행, 식당, 매점, 복사실 관리 및 운영)

- ① 식당, 커피전문점, 매점, 문구점, 은행, 복사실은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, 계약 관련 부서에서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② 계약 관련 부서는 운영업체가 불친절하거나 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민원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8조 (생활관 관리 및 운영) 생활관은 '생활관 운영규정, 생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, 생활관 관생 수칙'에 따라 생활관장이 관리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.

제19조 (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)

- ① 체육시설은 온라인(시설대여시스템)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이 관리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.
- ② 해당 시설 관련 부서장은 미예약 사용자, 외부인, 시설물 파손자 등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고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.
- 제20조 (휴게실, 주차장 관리 및 운영) 휴게실 및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은 관련 부서장이 책임을 진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정일: 2012.12.21